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유진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b> <b>성을</b> 감안하여 <b>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b> <b>투자신탁의</b> <b>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b> <b>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b>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b>높은 위험</b>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a href="#">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a>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진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fund.eugenefn.com">fund.eugenefn.com</a>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3년 7월 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년 9월 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 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http://fund.eugenefn.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진 챔피언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4.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3.07.05.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 [펀드코드: CA122]

###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유진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이며,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원본 손실 위험, 환율 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4차 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0% 이내	1.5400	0.6800	1.7200	1.5453	265	435	611	981	2,01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없음	1.8500	0.9900	1.8800	1.8555	198	402	613	1,053	2,274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0% 이내	1.2000	0.3400	1.2800	1.2054	181	317	457	754	1,59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1.3500	0.4900	1.4600	1.3553	147	299	456	788	1,724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 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2.07.06 ~ 23.07.05	21.07.06 ~ 23.07.05	20.07.06 ~ 23.07.05	18.07.06 ~ 23.07.0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 (C)(%)	2018-07-02	19.08	-1.02	10.81	8.77	8.69	
비교지수(%)	2018-07-02	-	-	-	-	-	
수익률 변동성 (%)	2018-07-02	17.83	18.66	18.36	20.72	20.72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로 운용편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최문희	1984	책임 매니저	7개	233억원	21.30	0.00	21.30	0.85	12년2개월		
허필현	1996	부책임 매니저	6개	56억원	-	-	-	-	-	3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유진자산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유진자산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p>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국가위험	<p>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p>			
	환율변동위험	<p>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통화[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호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p>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공시장소	<p>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fund.eugenefn.com">www.fund.eugenefn.com</a>)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에 게시합니다.</p>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			
	수익자	투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29-3300] /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www.Fund.eugenefn.com">www.Fund.eugenefn.com</a>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b>총액</b>	
<b>효력 발생일</b>	2023년 9월 7일	<b>존속 기간</b>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 없음
<b>판매회사</b>	집합투자업자(www.fund.eugenefn.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b>참조</b>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및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b>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b> 에 따라 <b>3단계로 구분</b> 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b>집합투자 기구의 종류</b>	<b>종류(Class)</b>	<b>집합투자기구의 특징</b>	
	<b>판매 수수료</b>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수수료 미징구 (C)</b>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판매 경로</b>	<b>온라인 (e)</b>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b>판매 경로</b>	<b>오프라인</b>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b>온라인 슈퍼(S)</b>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b>기타</b>	<b>랩(W)</b>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자본시장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개인연금 (P)</b>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퇴직연금 (R)</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고액(I)</b>	최소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기관(F)</b>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무권유 저비용 (G)</b>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fund.eugenefn.com](http://www.fund.eugenef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und.eugenefn.com](http://www.fund.eugenefn.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und.eugenefn.com](http://www.fund.eugenefn.com))

# [목 차]

<b>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b>	<b>12</b>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2
3. 모집예정금액 .....	12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3
5. 인수에 관한 사항 .....	13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13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b>	<b>14</b>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14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5
4. 집합투자업자 .....	15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15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17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7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20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25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32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36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37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40
<b>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b>	<b>45</b>
1. 재무정보.....	4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4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52
<b>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b>	<b>56</b>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5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58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58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59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59
6. 채권평가회사 .....	59
<b>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b>	<b>60</b>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60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63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64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67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8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68
<b>[불임] 용어 풀이 .....</b>	<b>69</b>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u>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 [CA122]</u>				
종류(클래스)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I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형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A123	CA124	CA125	CA126	CA127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형(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형(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형 (C-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형 (C-P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형 (C-R)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A128	CA129	CA130	CA131	CA132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형 (C-Re)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형(S)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형(S)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 (A-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 (C-G)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A133	CA134	CA135	CA136	CA13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이 가능하며, 1좌(최초 설정시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fund.eugenefn.com">fund.eugenefn.com</a> ) 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 [CA122]				
종류(클래스)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I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형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A123	CA124	CA125	CA126	CA127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형(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형(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형 (C-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형 (C-P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형 (C-R)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A128	CA129	CA130	CA131	CA132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형 (C-Re)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형(S)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 (S-P)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 (A-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 (C-G)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A133	CA134	CA135	CA136	CA13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2018.07.02	최초설정
2019.07.26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019.09.16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2019.09.16)에 따른 정정
2019.10.0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조재현→최문희)
2019.11.29	1)투자자문회사인 (주)디셈버앤팍너자산운용이 활용하는 외부 데이터에 대한 일부 내용 변경 2)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07.15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07.16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3) <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개정
2021.12.08	1) 운용역 변경 (최문희→최문희,주민근)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2.07.15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023.07.18	1)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변경(90%→60%)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주민근→허필현)

	3)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2.20. 시행) 5)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23.01.01. 시행)
2023.09.07	투자자문 해지에 따른 펀드명 및 투자전략 변경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1)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진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22층 대표전화 ☎ 02-2129-3300 . 홈페이지 fund.eugenefn.com

주)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해당사항 없음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최문희	1984	책임 매니저	7개	233억원	21.30	0.00	21.30	0.85	경력년수 : 12년2개월 -2010.04~2012.08 KIS채권평가 -2012.09~2017.11 흥국자산운용 -2018.11~2019.09 지안리서치 -2019.09~현재 유진자산운용 증권운용본부	
허필현	1996	부책임 매니저	6개	56억원	-	-	-	-	경력년수 : 3년 -2020.07~현재 유진자산운용 증권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구분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조재현	2018.07.02 ~ 2019.10.03
책임운용전문인력	최문희	2019.10.03 ~ 현재

#### 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구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주민근	2021.12.08 ~ 2023.07.17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필현	2023.07.18 ~ 현재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기타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자본시장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펀드, 기관투자자 또는 고액거래자(100 억 이상 개인, 500 억 이상 법인)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주2)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	60% 이상

※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sup>주1)</sup>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 이상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환율위험을 해지 하기 위한, 법 제5조제1항내지제3항에 의거한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 상기의 투자대상 외에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두자신탁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주2) 투자대상 :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주1)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집합투자증권	40%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환매조건부매도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 기준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증권의 차입	20%이하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증권의 차입
<p>※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li> <li>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li> <li>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li> <li>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li> <li>제2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li> </ol>		
<p>※ 집합투자업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중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li> <li>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li> <li>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li>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까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li> </ol>		
<p>※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 제2호, 제3호, 제4호가목 및 나목,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주2) 투자대상 :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주3)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5)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li> <li>-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li> </ul>	-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기 못한 자와 장외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li> <li>-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li> </ul>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p>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1)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범위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기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사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 (1) 기본 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60% 이상)을 미국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4차 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투자대상	투자비중
<u>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모투자신탁[주식]</u>	60% 이상

\* 투자비중 :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통화관련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2) 세부 운용전략 -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60% 이상)을 미국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4차 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 ▶ 투자 유니버스 선정

- 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4차산업 관련 여부 등을 조사
- 종목별 주식의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을 고려하여 유니버스 구성

### ▶ MP/AP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실행

- 유니버스 종목을 대상으로 1)재무비율, 2)밸류에이션 지표, 3)주가모멘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해 투자 비중을 결정하여 MP 포트폴리오 구성

- 1) 재무비율: ROE, EPS, EPS 성장률 등
- 2) 밸류에이션 지표: Trailing PE, Forward PE, PEG 등
- 3) 주가모멘텀: 기간수익률, 기술지표 등

<MP 구성을 위한 정량 분석 예시>

티커	종목명	섹터	ROE	EPS 1M%	EPS 3M%	신용	PE	Growth	PEG	상대순위	모멘텀	상대순위	스코어
AMZN US	아마존닷컴	자유소비재	14.1	26.2	12.8	IG3	34.64	51.21	0.68	2	8.16	11	5.6
NVDA US	엔비디아	정보기술	53.4	0.9	2.4	IG1	44.84	49.31	0.91	6	18.46	3	4.8
META US	메타 플랫폼스	커뮤니케이션	22.9	2.4	2.1	IG1	17.95	27.44	0.65	1	4.68	17	7.4
CHTR US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커뮤니케이션	52.4	-0.8	-1.1	IG9	11.97	15.90	0.75	4	19.42	2	3.2
CMCSA US	컴캐스트	커뮤니케이션	11.8	2.5	-0.4	IG3	11.84	8.68	1.36	13	12.31	5	9.8
NFLX US	넷플릭스	커뮤니케이션	17.3	0.7	8.1	IG4	28.81	32.28	0.89	5	4.04	18	10.2
BKNG US	부킹 홀딩스	자유소비재	1098.2	0.1	-0.2	IG1	21.08	20.00	1.05	8	10.45	8	8.0
LRCX US	램리서치	정보기술	34.1	8.8	8.7	IG3	24.03	20.57	1.17	9	5.61	14	11.0
GOOGL US	알파벳	커뮤니케이션	14.6	6.3	3.1	IG1	19.88	16.51	1.20	11	5.87	13	11.8
AVGO US	브로드컴	정보기술	60.0	0.0	2.1	IG2	19.05	12.79	1.49	15	8.33	10	13.0
ADBE US	어도비	정보기술	35.7	0.0	2.4	IG1	30.77	16.90	1.82	21	20.75	1	13.0
ADP US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	산업재	82.3	0.8	0.4	IG1	27.38	16.00	1.71	18	12.03	6	13.2
CSCO US	Cisco Systems Inc	정보기술	27.0	2.9	2.9	IG1	13.53	7.50	1.80	20	11.31	7	14.8
INTU US	인튜이트	정보기술	6.2	0.0	0.4	IG1	31.24	15.94	1.96	22	5.88	12	18.0
PYPL US	페이팔 홀딩스	금융	13.1	0.7	0.2	IG4	11.12	15.96	0.70	3	-12.46	40	17.8
MELI US	메르카도리브레	자유소비재	34.0	23.7	22.3	IG6	48.32	46.80	1.03	7	-3.94	29	15.8
AMD US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	정보기술	7.5	-8.4	-8.9	IG2	30.80	26.26	1.17	10	-5.53	35	20.0
QCOM US	퀄컴	정보기술	26.7	-1.8	-3.0	IG3	12.89	8.25	1.56	16	-2.88	27	20.4

- 개별기업 이슈, 업종 전망, 산업 내 위치 등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MP포트폴리오를 수정/보완하여 AP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실행

### ▶ 수시 리밸런싱

- 시장상황에 적시 대응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른 수시 리밸런싱을 수행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및 리밸런싱 전략은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시장상황이나 운용여건 등으로 상기 투자국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국가에 대한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및 운용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3)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로 미국에 상장된 4차 산업 관련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함에 따라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및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나. 위험관리

### 1) 환율변동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투자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주식들은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① 환해지 방법 및 목표해지비율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USD) 등에 대한 환해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해지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80% ~ 11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환해지는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해외주식등에 대한 투자분의 환해지 비율은 목표해지비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해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해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다만, 환해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② 환해지 장단점

- 환해지란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원화대 외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해지의 장점은 환율 하락(원화평가절상)시 발생하는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해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환해지의 단점은 환해지할 경우 환율 상승(원화평가절하)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해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손실에 충당해야 하므로 환차익을 얻지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해지시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 ③ 환해지가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해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 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해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 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해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해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해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해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해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나 해지로 인한 손실이 오히려 크다고 판단될 경우 환해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환해지와 관련하여 환해지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환해지 비용

(단위: %, 원, 기준일: 2023.07.01)

환해지 비율	환해지 비용
94.591705	2,401,800

주) 환해지 비용 및 효과는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해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오퍼레이션 위험 관리 방안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보다 더 높습니다.

###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기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의(Yellow) : 발생 Event에 대한 자본시장 영향 분석 → 운용전략의 조정 및 유동성관리 재검토
- 경계(Orange) : 위기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유동성 점검 등 발생 현안 논의, 관리방안 마련 및 자산매각순서 등 검토
- 위기(Red) : 위기전담조직 운영 강화 → 펀드별 유동성 확보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환매 연기방안 마련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미국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4차 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60% 이상)을 투자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또한, 주된 투자대상인 해외자산 등은 외국통화로 거래되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계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등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신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 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
자금송환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해외주식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을 수준인 투자자

	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수종목 집중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통화[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호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해지에 따른 위험	환해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 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해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 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해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해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해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해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해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거나 해지로 인한 손실이 오히려 크다고 판단될 경우 환해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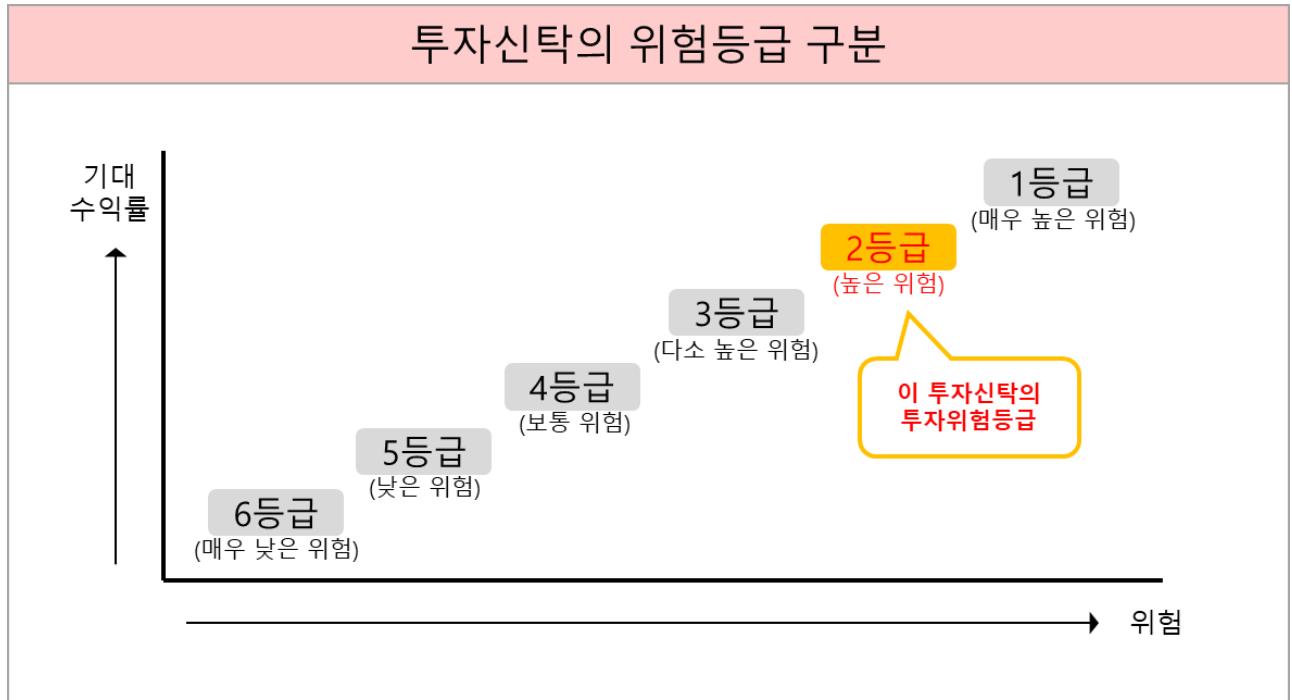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해외)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은 신탁재산의 가치하락 또는 환매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 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기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편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유진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진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8.4112% 수준이므로 유진자산운용(주)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위험등급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

**<유진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1) 투자대상자산 고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li> <li>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③ 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② 레버리지(차입)을 일으키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li> <li>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②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주식형 및 주식파생형)</li> <li>③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④ 레버리지(차입)을 일으키지 않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li> <li>⑤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4등급	보통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② 중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③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귀책사유 이외의 협약 해지 시 원금회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li> <li>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한정)</li> <li>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li> <li>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li> <li>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li> <li>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미만의 펀드 또는 특별한 상황의 펀드에 적용되는 유진자산 운용(주)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의 펀드 :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상의 펀드로서 '변동성 반영 위험등급 기준'에 따른 위험도가 낮게 측정되더라도 투자자에게 그 위험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펀드이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 구조의 펀드 등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투기등급채권 등\*, 무담보대출 및 대출채권, 파생상품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투기등급채권 등: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자산유동화관련 채권 (BBB+ 이하), 후순위채권, 주권관련사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

3.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이상), CP(A3-등급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

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이상), CP(A2-등급이상), 현금성자산 등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7.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0.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 등)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 변동성 반영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펀드에 적용되는 유진자산운용(주)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사용합니다.

$$\sigma = \sqrt{\frac{52}{156-1} \sum_{t=0}^{155} (r_t - \bar{r})^2}, \quad \bar{r} = \frac{1}{156} \sum_{t=0}^{155} r_t$$

※ 표준편차 계산수식 :

\*  $r_t$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 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3.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펀드로 '변동성 반영 위험등급 기준'에 따른 위험도가 낮게 측정되더라도 투자자에게 그 위험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펀드이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 구조의 펀드는 이를 감안하여 투자대상자산 고려 위험등급 기준으로 부여한 최초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변경이 운용전략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간접펀드가 신규펀드인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6.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7. EL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펀드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운용전략이 동일한 경우, 사모펀드의 과거 수익률 변동성 측정값으로 공모펀드의 위험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됩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b>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기타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자본시장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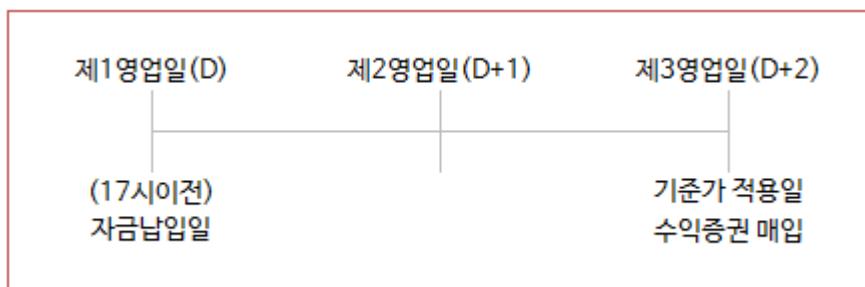
기관(F)	펀드, 기관투자자 또는 고액거래자(100 억 이상 개인, 500 억 이상 법인)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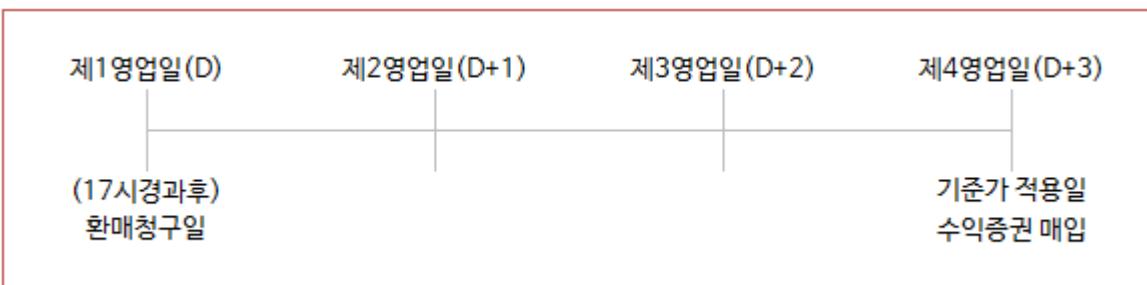
주2)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7시(오후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 매입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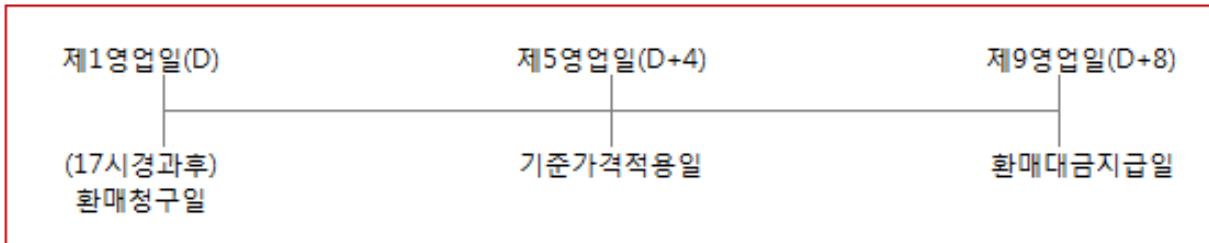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7시(오후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금액 지급



- ③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수익증권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8) 수익증권 환매연기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⑤'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9) 수익증권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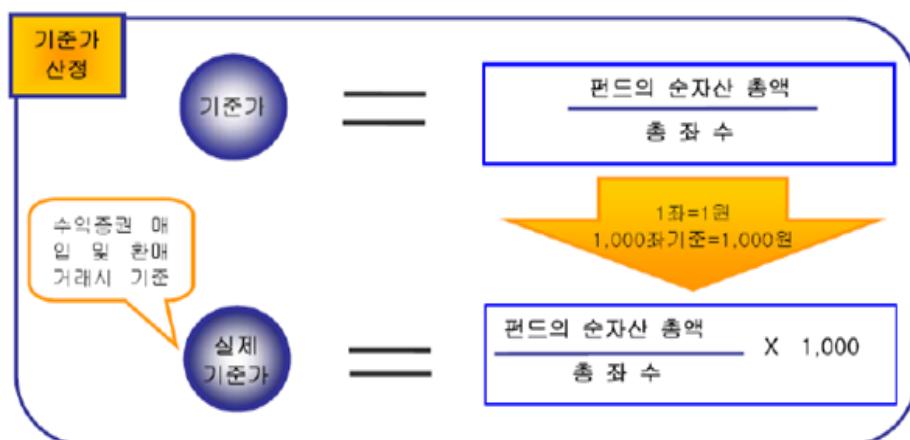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각 영업점,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련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주)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0%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0%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 (C-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 (C-R)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 (C-R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없음	3년 미만 판매시 판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 (A-G)	납입금액의 0.70%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형(C-G)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0.8100	0.6800	0.0300	0.0200	0.0053	1.5453	1.7200	1.6234	0.6632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0.8100	0.3400	0.0300	0.0200	0.0054	1.2054	1.2800	1.2831	0.659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0.8100	0.9900	0.0300	0.0200	0.0055	1.8555	1.8800	1.9338	0.571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0.8100	0.4900	0.0300	0.0200	0.0053	1.3553	1.4600	1.4319	0.6444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기관형(C-F)	0.8100	0.0300	0.0300	0.0200	0.0055	0.8955	-	0.9731	0.6601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고액형(C-I)	0.8100	0.3900	0.0300	0.0200	0.0056	1.2556	-	1.3332	0.6602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랩형(C-W)	0.8100	-	0.0300	0.0200	-	0.8600	-	0.8600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개인연금형 (C-P)	0.8100	0.8000	0.0300	0.0200	-	1.6600	-	1.6600	-
수수료미징구-온라 인-개인연금형 (C-Pe)	0.8100	0.4000	0.0300	0.0200	0.0037	1.2637	-	1.3411	0.6550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퇴직연금형 (C-R)	0.8100	0.7600	0.0300	0.0200	0.0035	1.6235	-	1.7034	0.6992
수수료미징구-온라 인-퇴직연금형 (C-Re)	0.8100	0.3800	0.0300	0.0200	0.0037	1.2437	-	1.3216	0.6652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형(S)	0.8100	0.2900	0.0300	0.0200	0.0037	1.1537	-	1.2318	0.6735
수수료미징구-온라 인슈퍼-개인연금형 (S-P)	0.8100	0.2300	0.0300	0.0200	0.0037	1.0937	-	1.1673	0.5985
수수료선취-오프라 인-무권유저비용형	0.8100	0.5200	0.0300	0.0200	-	1.3800	-	1.3800	-

(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0.8100	0.7500	0.0300	0.0200	-	1.6100	-	1.6100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452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수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수수수료, 기타매수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수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수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53,294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예시)]

구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투자기간 (단위:천원)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7	419	587	939	1,9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65	435	611	981	2,018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3	300	433	713	1,51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1	317	457	754	1,59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0	386	588	1,012	2,19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8	402	613	1,053	2,274
수수료선취 -온라인형(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9	283	432	747	1,6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7	299	456	788	1,72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형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187	287	498	1,1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0	203	311	540	1,198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9	262	401	693	1,525

-오프라인-고액형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7	278	425	735	1,613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	180	275	479	1,064
-오프라인-랩형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8	180	275	479	1,064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0	346	527	909	1,978
-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0	346	527	909	1,978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0	264	403	697	1,534
-온라인 -개인연금형(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7	280	428	739	1,622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6	338	516	889	1,938
-오프라인 -퇴직연금형(C-R)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5	355	541	932	2,025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7	260	397	687	1,511
-온라인 -퇴직연금형(C-R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5	276	421	729	1,600
수수료후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8	241	368	638	1,408
-온라인슈퍼형(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6	257	393	680	1,498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229	350	606	1,338
-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0	244	373	645	1,423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0	355	505	820	1,714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0	355	505	820	1,714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5	336	512	882	1,923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 (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 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5	336	512	882	1,923

주) 투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 ①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 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②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②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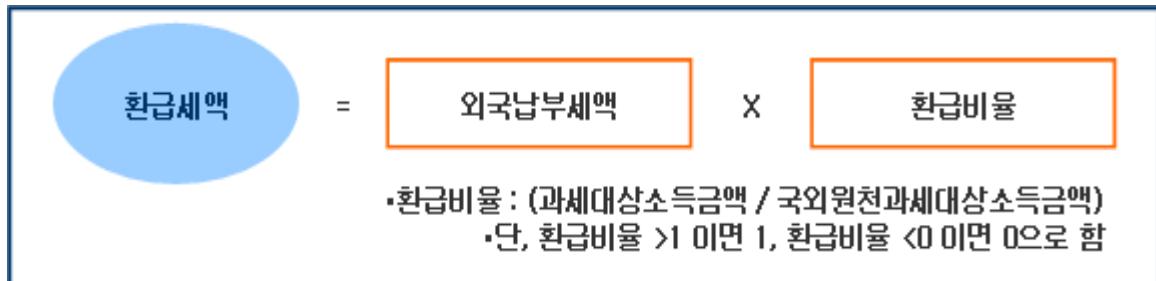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사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 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다만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 기( 2022.07.02 - 2023.07.01 )	회계감사면제	-
제 4 기( 2021.07.02 - 2022.07.01 )	회계감사면제	-
제 3 기( 2020.07.01 - 2021.07.01 )	회계감사면제	-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5 기	제 4기	제 3기
	( 2023.07.01 )	( 2022.07.01 )	( 2021.07.01 )
운용자산	7,995,161,503	8,391,166,467	10,002,553,649
증권	7,898,008,257	8,211,449,944	9,821,586,300
파생상품	-54,643,478	-30,391,330	-83,169,957
부동산/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51,796,724	210,107,853	264,137,30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85,271,987	5,769,583	116,929,940
자산총계	8,180,433,490	8,396,936,050	10,119,483,58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6,795,661	34,540,706	75,373,815
부채총계	56,795,661	34,540,706	75,373,815
원본	5,421,247,667	6,561,276,618	6,510,149,663
수익조정금	-269,629,071	44,160,904	83,081,152
이익잉여금	2,972,019,233	1,756,957,822	3,450,878,959
자본총계	8,123,637,829	8,362,395,344	10,044,109,774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	제 4기	제 3기
	( 2022.07.02 - 2023.07.01 )	( 2021.07.02 - 2022.07.01 )	( 2020.07.02 - 2021.07.01 )
운용수익	1,371,112,644	-1,603,433,278	2,894,223,103
이자수익	2,914,812	970,919	476,894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368,197,832	-1,604,404,197	2,893,746,209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08,071,003	132,087,765	116,165,556
관련회사 보수	105,669,203	127,326,765	112,421,556
매매수수료	2,401,800	4,761,000	3,744,000
기타비용	2,096,415	2,402,687	2,171,192
당기순이익	1,260,945,226	-1,737,923,730	2,775,886,355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 2022.07.02 - 2023.07.01 )			전기( 2021.07.02 - 2022.07.01 )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52,528	2.4018	0.0046	95,572	5.0000	0.005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	-	-
합계	52,528	2.4018	0.0046	95,572	5.0000	0.005

주)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

##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5기( 2023.07.01 )		제4기( 2022.07.01 )		제3기( 2021.07.01 )	
	금 액	액	금 액	액	금 액	액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68,186,284	151,796,724	94,998,853	210,107,853	116,843,956	264,137,306
2. 예치금						
3. 증거금	83,610,440		115,109,000		147,293,350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7,898,008,257		8,211,449,944		9,821,586,30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7,898,008,257		8,211,449,944		9,821,586,300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54,643,478		-30,391,330		-83,169,957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금융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타자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85,271,987		5,769,583		116,929,940
2. 정산미수금			597,000			
3. 미수이자	307,177		3,591		736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84,964,810		5,168,992		116,929,204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8,180,433,490		8,396,936,050		10,119,483,589
부 채						
운용부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타부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56,795,661		34,540,706		75,373,815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242,000					
4. 수수료미지급금	32,572,980		5,239,141			
5. 기타미지급금	22,980,681		29,301,565			
부 채 총 계		56,795,661		34,540,706		75,373,815
자 본						
1. 원본	5,421,247,667		6,561,276,618		6,510,149,66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702,390,162		1,801,118,726		3,533,960,111	
(발행좌수 당기: 5,421,247,667 좌)						
전기: 6,561,276,618 좌)		2,972,019,233		1,756,957,822		3,450,878,959
전전기: 6,510,149,663 좌)		-269,629,071		44,160,904		83,081,152
(기준가격 당기: 1,566.81 원)						
전기: 1,340.48 원						
전전기: 1,594.31 원)						
자 본 총 계		8,123,637,829		8,362,395,344		10,044,109,774
부채와자본총계		8,180,433,490		8,396,936,050		10,119,483,589

##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5기( 2022.07.02-2023.07.01 )		제4기( 2021.07.02-2022.07.01 )		제3기( 2020.07.02-2021.07.01 )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1. 이자수익	2,914,812	2,914,812	970,919	970,919	476,894	476,894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1. 지분증권매매차익		3,168,085,947		2,236,848,986		4,211,845,307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071,257,000		1,293,979,000		1,094,456,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935,199,705		52,778,627		1,787,449,138	
5. 외환거래/평가차익	306,147,852				451,182,463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890,091,359			
7. 기타거래차익	855,481,390				878,757,706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1. 지분증권매매차손		1,802,289,915		3,846,014,183		1,321,843,098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1,310,809,800		1,837,905,000		1,080,367,0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1,243,447,641			
5. 외환거래/평가차손	469,000,000		759,570,000		240,320,000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5,091,542		1,156,098	
8. 기타거래손실	22,480,115					
<b>운 용 비 용</b>						
1. 운용수수료	66,675,845	107,765,618	79,272,443	129,729,452	69,709,442	114,592,748
2. 판매수수료	36,525,635		45,120,087		40,132,037	
3. 수탁수수료	2,467,723		2,934,235		2,580,077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096,415		2,402,687		2,171,192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1,260,945,226		-1,737,923,730		2,775,886,355
<b>최당순이익(또는 최당순손실)</b>		0.232593178		-0.264875851		0.426393631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63	84	3	4	14	20	51	81
2021.07.02 - 2022.07.01	62	98	12	19	11	17	63	84
2020.07.02 - 2021.07.01	60	70	22	32	21	30	62	101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580,421좌/22,844,928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4,969,405좌/39,808,877원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3	4	1	1	1	1	3	5
2021.07.02 - 2022.07.01	5	8	2	3	4	6	3	4
2020.07.02 - 2021.07.01	3	3	11	16	9	13	5	8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55,699좌/2,613,610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762,753좌/10,418,765원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2	2	1	1	1	1	2	2
2021.07.02 - 2022.07.01	2	3	1	2	1	2	2	2
2020.07.02 - 2021.07.01	2	2	2	3	2	3	2	3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89,320좌/1,799,665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291,799좌/3,573,610원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11	14	0	0	10	13	1	1
2021.07.02 - 2022.07.01	10	16	0	1	0	0	11	14
2020.07.02 - 2021.07.01	11	12	1	1	1	1	10	16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5	7	1	1	3	4	4	6
2021.07.02 - 2022.07.01	4	6	6	9	4	7	5	7
2020.07.02 - 2021.07.01	4	4	8	11	8	11	4	6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932,253좌/2,903,973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216,779좌/8,082,689원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C-F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8	10	0	0	0	0	8	12
2021.07.02 - 2022.07.01	8	12	0	0	0	0	8	10
2020.07.02 - 2021.07.01	8	9	0	0	0	0	8	12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966,995좌/13,732,590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284,421좌/14,613,752원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C-I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35	44	0	0	0	0	35	52
2021.07.02 - 2022.07.01	35	53	0	0	0	0	35	44
2020.07.02 - 2021.07.01	35	38	0	0	0	0	35	53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C-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0	0	0	0	0	0	0	0
2021.07.02 - 2022.07.01	0	0	0	0	0	0	0	0
2020.07.02 - 2021.07.01	0	0	0	0	0	0	0	0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0,535좌/184,047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71,303좌/394,406원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C-R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0	0	0	0	0	0	0	0
2021.07.02 - 2022.07.01	0	0	0	0	0	0	0	0
2020.07.02 - 2021.07.01	0	0	0	0	0	0	0	0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2,046좌/146,430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6,767좌/58,307원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C-R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0	0	0	0	0	0	1	1
2021.07.02 - 2022.07.01	0	1	0	0	0	0	0	0
2020.07.02 - 2021.07.01	0	0	1	1	0	0	0	1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55,271좌/552,296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43,393좌/1,056,134원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1	1	0	0	0	0	1	1
2021.07.02 - 2022.07.01	1	1	0	0	0	0	1	1
2020.07.02 - 2021.07.01	1	1	0	1	1	1	1	1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29,075좌/647,044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77,715좌/1,210,145원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H)[주식] Class 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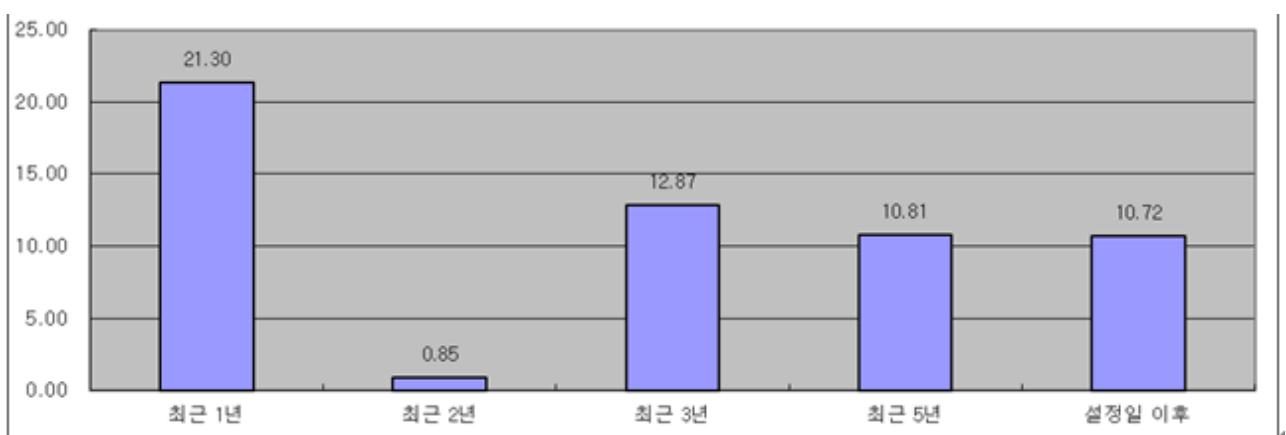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0	0	0	0	0	0	0	0
2021.07.02 - 2022.07.01	0	0	0	1	0	0	0	0
2020.07.02 - 2021.07.01	0	0	0	0	0	0	0	0

(주1) 2022.07.02 - 2023.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5,570좌/265,273원

(주2) 2020.07.02 - 2021.07.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8,089좌/401,069원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2.07.06 ~ 23.07.05	21.07.06 ~ 23.07.05	20.07.06 ~ 23.07.05	18.07.06 ~ 23.07.05	18.07.02 ~ 23.07.05
투자신탁(운용)	21.30	0.85	12.87	10.81	10.72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17.83	18.66	18.36	20.72	20.72
Class A	19.45	-0.71	11.15	-	9.06
비교지수	-	-	-	-	-
Class A-E	19.86	-0.36	11.53	9.50	9.50
비교지수	-	-	-	-	-
Class C	19.08	-1.02	10.81	8.77	8.69
비교지수	-	-	-	-	-
Class C-E	19.68	-0.51	11.37	9.34	9.25
비교지수	-	-	-	-	-
Class C-F	20.23	-0.06	11.88	9.82	9.74
비교지수	-	-	-	-	-
Class C-I	19.80	-0.42	11.48	-	8.74
비교지수	-	-	-	-	-
Class C-PE	19.79	-0.42	11.47	-	10.36
비교지수	-	-	-	-	-
Class C-R	19.37	-0.78	11.11	-	6.79
비교지수	-	-	-	-	-
Class C-Re	19.81	-0.40	11.49	-	7.29
비교지수	-	-	-	-	-
Class S	19.92	-0.31	11.59	9.54	9.46
비교지수	-	-	-	-	-
Class S-P	19.99	-0.25	11.66	9.61	9.53
비교지수	-	-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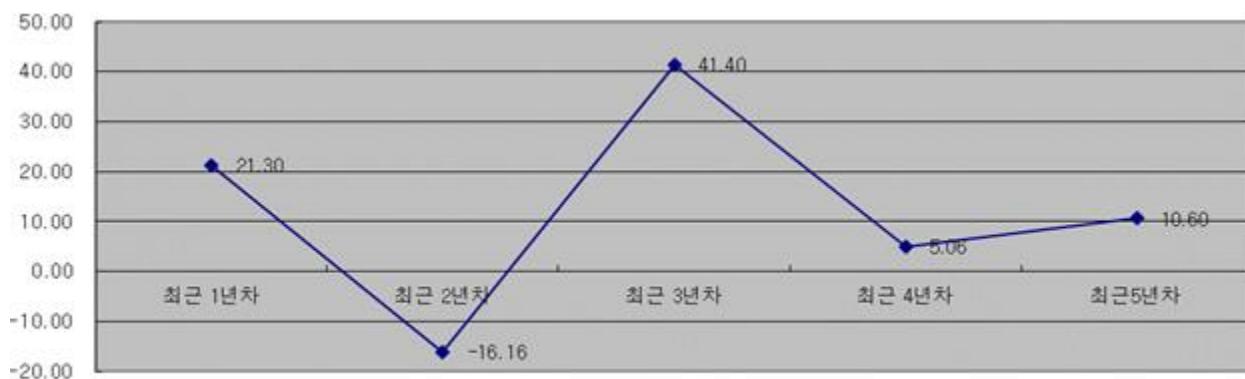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로 운용편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통합펀드	22.07.06 ~ 23.07.05	21.07.06 ~ 22.07.05	20.07.06 ~ 21.07.05	19.07.06 ~ 20.07.05	18.07.06 ~ 19.07.05
비교지수	-	-	-	-	-
Class A	19.45	-17.46	39.29	3.45	8.55
비교지수	-	-	-	-	-
Class A-E	19.86	-17.17	39.76	3.80	9.32
비교지수	-	-	-	-	-
Class C	19.08	-17.72	38.88	3.09	8.57
비교지수	-	-	-	-	-
Class C-E	19.68	-17.30	39.55	3.65	9.17
비교지수	-	-	-	-	-
Class C-F	20.23	-16.92	40.18	4.11	9.61
비교지수	-	-	-	-	-
Class C-I	19.80	-17.22	39.70	3.72	5.43
비교지수	-	-	-	-	-
Class C-PE	19.79	-17.22	39.70	6.21	-
비교지수	-	-	-	-	-
Class C-R	19.37	-17.52	39.32	-	-
비교지수	-	-	-	-	-
Class C-Re	19.81	-17.21	39.71	-	-
비교지수	-	-	-	-	-
Class S	19.92	-17.13	39.83	3.84	9.34
비교지수	-	-	-	-	-
Class S-P	19.99	-17.08	39.92	3.92	9.41

비교지수	-	-	-	-	-	-
------	---	---	---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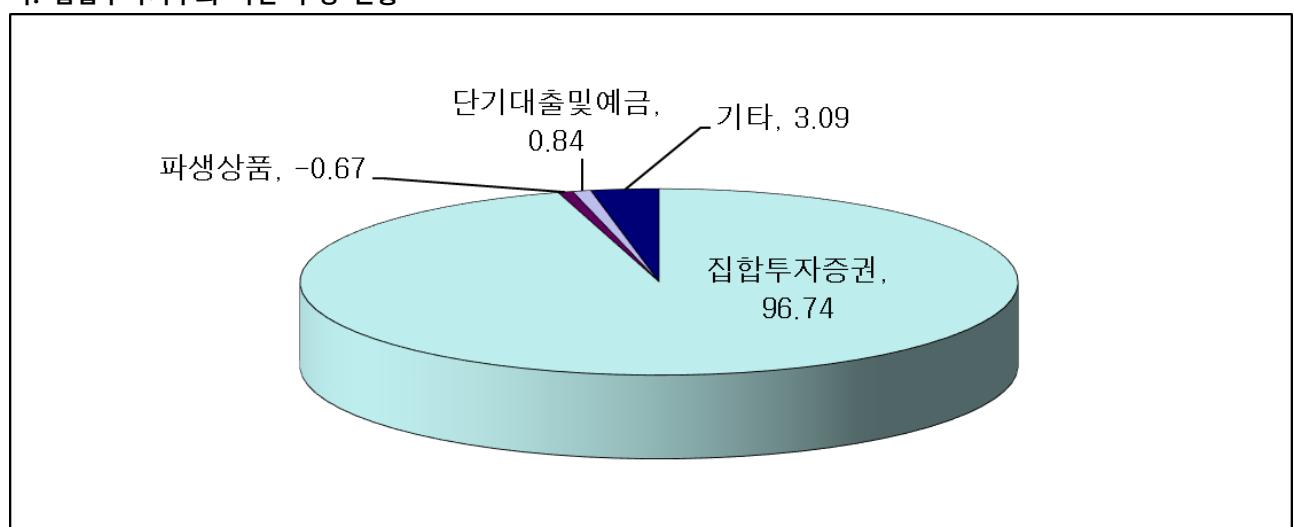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2023.07.01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79	0	0	0	0	0	1	3	82
	(0.00)	(0.00)	(0.00)	(96.10)	(0.00)	(0.00)	(0.00)	(0.00)	(0.00)	(0.83)	(3.07)	(101.00)
USD	0	0	0	0	0	-1	0	0	0	0	0	-1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
합계	0	0	0	79	0	-1	0	0	0	1	3	82
	(0.00)	(0.00)	(0.00)	(96.74)	(0.00)	(-0.67)	(0.00)	(0.00)	(0.00)	(0.84)	(3.0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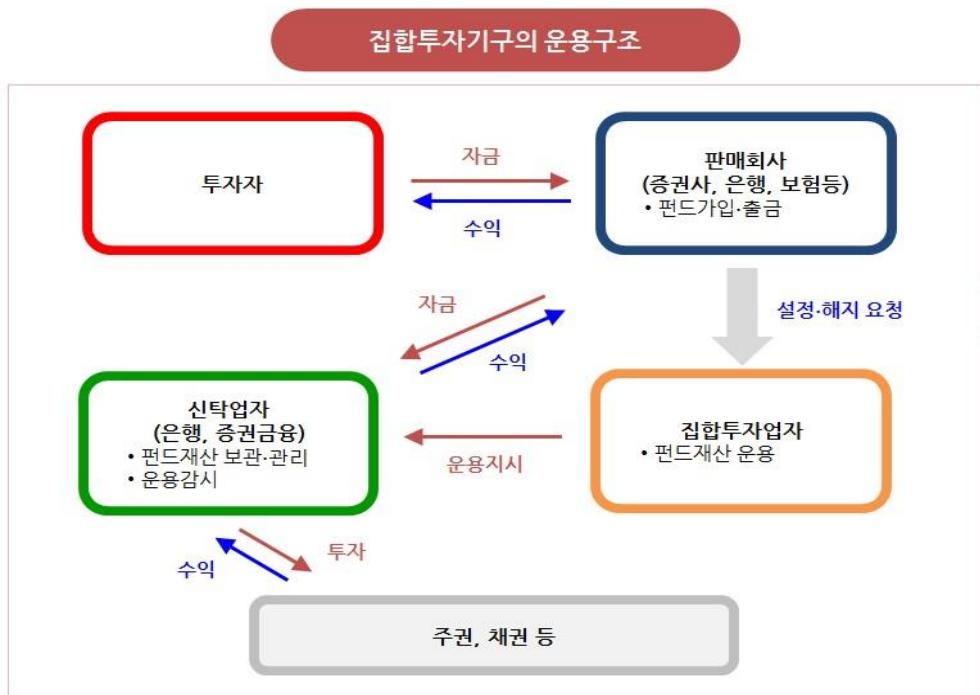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 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 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유진자산운용(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파크원타워1 22층
연락처	☎ (02) 2129-3300
인터넷 홈페이지	fund.eugenefn.com
회사연혁	<p>1989.09 우성투자자문 설립</p> <p>1991.05 한일은행 그룹에서 인수, '한일투자자문'으로 상호변경</p> <p>1996.09 '한림투자신탁운용'으로 업종 전환 (대림그룹과 합작)</p> <p>1998.05 '한일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p> <p>1999.06 세계적인 투자가인 소로스가 경영권을 가진 서울증권 인수</p> <p>2006.04 '서울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p> <p>2006.12 유진그룹에서 서울증권 인수,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p> <p>2008.01 '유진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p>
자본금	225억원
주요주주현황	유진투자증권 100%

#### 나. 주요업무

##### (1) 주요 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FY2022 2022.12.31	FY2021 2021.12.31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50,066	52,415
	I. 현금 및 예치금	14,689	13,864
	II. 당기순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077	20,627
	III.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9	53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5	30
	V. 종속기업투자자산	2,712	2,500
	VI. 유형자산	3,919	4,616
	VII. 기타자산	11,554	10,726
	부채총계	21,305	21,793
	I. 차입부채	3,000	21,793
	II. 기타부채	18,305	-
	자본총계	30,622	30,622
	I. 자본금	22,500	22,500
요약 손익계산서	II. 자본잉여금	2,486	2,486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4)	(117)
	IV. 이익잉여금	3,878	5,753
	I. 영업수익	17,678	26,159
	II. 영업비용	19,938	21,767
	III. 영업이익	-2,260	4,392
	IV. 영업외수익	0	430
	V. 영업외비용	3	5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63	4,817
	VII. 법인세비용	-388	1,043
	X. 당기순이익	-1,874	3,774

### 라. 운용자산규모

(2023.07.05 기준 / 단위:억원 / 투자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2,804	18,143	978	0	1,967	3,068	0	8,407	8,482	945	28,423	73,217
-----	-------	--------	-----	---	-------	-------	---	-------	-------	-----	--------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 1599-9999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 나. 주요업무

####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의무와 책임

#####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

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층 ☎ (02)2180-0400 / <a href="http://www.shinhanaitas.com">www.shinhanaitas.com</a>
회사연혁 등	2000.06 설립 2000.09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2008.05 주식회사 신한은행 자회사 편입

#### 나. 주요업무

#####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 6. 채권평가회사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엔아이	에프앤자산평가	KIS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a href="http://www.koreabp.com">www.koreabp.com</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a href="http://www.fnpricing.com">www.fnpricing.com</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회사 연혁	2000.05 설립 2000.07 금융감독원 등록	2000.06 설립 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2011.06 설립 2011.09 금융감독원 등록	2000.06 설립 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총회 연기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 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 법 제19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제4 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④'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이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유진자산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fund.eugenefn.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③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진 챔피언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의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①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특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fund.eugenefn .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단위:백만원)
성명(상호)	관 계			
-	-	-	-	-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 금액 (단위:백만원)	거래사유
-	-	-	-	-

### 다. 투자증개업자 선정 기준

①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구분	평가항목				
운용부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세미나/ 탐방 / NDR 등			
		투자증개업자 업무담당자 역량			
		IR미팅, NDR 일정 확보			
		NDR 일정 확보 능력			
		기업 분석 정보의 적시 제공			
		기타 사항			
트레이딩부서	매매체결의 정확/신속				

	결제 프로세스 정확성
--	-------------

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구분	평가항목
운용부서	시장 및 기관 동향
	발행 및 수요예측의 유효성
	세미나지원 및 리서치
	거래보안유지
트레이딩부서	매매체결의 정확/신속
	결제 프로세스 정확성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펀드명칭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
투자금액	8억원
보유좌수	783,093,648좌

주) 투자금액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추가설정(환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보유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불임] 용어 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